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밸류웨이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유 : 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②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
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④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23. 4. 20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재 정정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<u>경과하였음에도</u>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2. 28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3. 1. 24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4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<u>700 만 원</u>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	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<u>900 만 원</u> 한도로 12%(<u>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</u>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
----	--------------	---	---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]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년 경과내역 삭제	[채권] <u>책임운용역 : 문성호</u> <u>(2014.08.29~2020.01.08)</u>] <u>부책임운용역 : 진재식</u> <u>(2017.07.28~2020.01.08)</u>]]	<u>〈삭 제〉</u> <u>〈삭 제〉</u>
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 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	최근 3년 경과내역 삭 제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 자신탁[채권] <u>책임운용역 : 문성호</u> <u>(2014.08.29~2020.01.08</u> <u>)</u> <u>부책임운용역 : 진재식</u> <u>(2017.07.27~2020.01.08</u> <u>)</u>	<u>〈삭 제〉</u> <u>〈삭 제〉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모자형 구조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	듀레이션 폭 확대	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모 투자신탁[채권] *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 리 : 기본적으로 듀레이션 <u>1~1.5년</u> 을 유지하되 효율적 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 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.	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모 투자신탁[채권] *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 리 : 기본적으로 듀레이션 <u>1~2년</u> 을 유지하되 효율적인 투자과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 구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〈신 설〉	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등 주석</u> <u>기재</u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 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 리	듀레이션 폭 확대	1)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 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 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% 이하를 투자하고, 투자신탁 재산의 40%이하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. 채권 모펀드에 투자는 운용	1)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 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 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% 이하를 투자하고, 투자신탁 재산의 40%이하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. 채권 모펀드에 투자는 운용

		규모 및 시장 상황에 따라 <u>듀레이션 1~1.5년</u> 수준인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과 <u>듀레이션</u> <u>3~4.5년</u> 수준인 트러스톤중 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에 채권모투자신탁의 투자 비중 을 조절합니다. ☐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: <u>듀레이션</u> <u>1~1.5년</u>	규모 및 시장 상황에 따라 <u>듀레이션 1~2년</u> 수준인 트 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과 <u>듀레이션 3~4.5</u> <u>년</u> 수준인 트러스톤중장기증 권모투자신탁[채권]에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. ☐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: <u>듀레이션 1~2</u> <u>년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2. 28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 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[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 항] <u>* 공제제도</u> <u>: 첨부 참조</u> <u>* 분리과세한도</u>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 외) <u>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</u> <u>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</u> <u>과세 적용</u>	[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 항] <u>* 공제제도</u> <u>: 첨부 참조</u> <u>* 분리과세한도</u>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 외) <u>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</u> <u>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</u> <u>용</u>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<u>연금소득</u>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
		*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〈추 가〉	<u>갓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</u> *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: 가입자가 <u>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5) 퇴직연금제도의 세계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③ 세액공제(2015. 1. 1. 부터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(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)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300 만원 이내)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	③ 세액공제(2023. 1. 1. 부터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12%(종합소득금액 4.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3. 1. 24. 기준</u>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〈신 설〉	<u>증권대여 및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</u> <u>주식 기재</u> <u>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, 주식의 매매회전을 기재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3. 1. 24. 기준</u>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3. 1. 24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년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24기(2021.12.31)</u> <u>제23기(2020.12.31)</u>	<u>제25기(2022.12.31)</u> <u>제24기(2021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(2) 수시공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

[첨부]

[변경 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 (900만원)	15%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〈삭 제〉

〈신 설〉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